Must Investment Advisory
Make Sure Money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㈜머스트투자자문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2014.11.26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) 제58조(수수료)에 의거하여 ㈜머스트투자자문(이하 '회사'라 한다.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"관련 법규"라고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"기본수수료"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금액 또는 투자일임계약금액에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.
② "성과수수료"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.
③ "기준지표 등"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수료의 고지)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시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4.11.26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]

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방법

당사의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.

1. 기본수수료

구분	산정방법
신규계약	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
증액	증액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(증액일수/365)

2. 성과수수료

구분	산정방법
계약만료	계약금액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
계약해지	계약금액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 X (운용일수/365)
증액	증액금액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 X (증액금액 운용일수/365)
감액	감액원금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 X (감액금액 운용일수/365)